

광주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5261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3.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467,4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467,4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26092 지급명령에 의한 ‘2,331,094원과 그중 1,999,320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6389 지급명령에 의한 ‘8,017,106원과 그중 7,002,924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 2022. 4. 14.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각 채권액은 합계 18,467,424원(= ① 채권액 4,379,712원 + ② 채권액 14,087,712원)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였는데, 망인은 2021. 12.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소외인 및 E, F, G이 있다.

다. 피고와 소외인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2. 3.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2. 3.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21. 1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소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2/11 이외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및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H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각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이 이 사건 협의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비록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분이 50%이고, 피고와 망인은 2016. 5.경부터 소외인에게 다액의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협의를 하게

되었으며,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가 1973. 5. 14. 혼인신고를 하였던 사실,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중인 1992. 10. 27.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2016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피고가 소외인의 어머니인 점,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망인이

소외인에게 다액의 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가 소외인과 이 사건 협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거나 피고에게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정이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1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1조합이 2016.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2,800,000원,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협의(2022. 3. 15.)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7,9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협의 이후인 2022. 4. 29. 1조합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2022.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235,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2022. 12. 20.)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을 소외인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액 18,467,424원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235,5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7,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7,600,000원 중 소외인의 상속분 2/11에 해당하는 25,018,181원(원 미만은 버린다) 가운데 적은 금액인 18,467,424원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18,467,4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467,4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준

별지